



공정거래위원회  
CCM인증



국가품질상  
KNQA인증

# 기업비용 보상보험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이 구입한 보장차량에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경미한 손상으로 인한 고객의 수리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함으로써 입은 비용손해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및 보상횟수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경미한 손상이란 보장차량의 외장차체(수직면, 수평면, 범퍼, 윈미러에 한함. 이하 같습니다.)에 발생한 칩(chip), 경미한 함몰(minor dent) 및 경미한 긁힘(light scratch) 등으로 입은 손상을 말하며,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 사고로 복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합계가 길이 150mm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차체상부(보닛, 루프, 트렁크)의 경우 직경 30mm 이내이어야 합니다.
  - 1. 칩(chip): 직경 30mm, 깊이 3mm 이내의 움푹 파인 자국을 말합니다. 부식 방지를 위해 충전 및 밀봉 수리하나 수리 후 손상은 육안으로 경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2. 경미한 함몰(minor dent): 길이 150mm 이내, 깊이 3mm 이내의 함몰 자국을 말합니다. 찢겨지거나 구멍이 발생하거나 차체의 구조, 정렬에 손상 및 변형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경미한 긁힘(light scratch): 길이 150mm 이내, 깊이 3mm 이내의 긁힘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보장차량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이하 “보장차량”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수리비용은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이하 “지정정비업체”라 합니다.)에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의 수리비용은 자동차 부품가격 및 자동차 수리 인건비 등 직접비용(부가세를 포함합니다.)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고객(보장차량의 운행자 포함)의 고의로 생긴 손해
- 2.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 3. 자동차제작사의 보증프로그램이나 각종 수리보증프로그램(리콜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
- 4.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5.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비용
- 6.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
- 7. 회사의 사전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수리
- 8. 사고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후에 통보된 손해
- 9. 판금도색(차체의 손상이 심하여 차체를 소성변형(塑性變形)시킨 후 도색해야 하는 경우)
- 10. 유상 운송(렌터카를 포함합니다) 중 발생한 손해. 단, 증권에 별도로 기재된 차량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11.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1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1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15. 화재, 폭발에 의한 손해
- 16.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견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단, 증권에 별도로 기재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17.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보상횟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고장
- 18. (자동)세차 및 브러쉬질(brushing) 등 통상의 차량관리
- 19. 보장차량의 차체 및 범퍼의 교체
- 20. 보장차량의 휘장(badges), 도안(decals), 장식(trims), 스티커(stickers) 또는 보호필름(plastic paint protection film)에 발생한 손해
- 21. 보장차량의 무광도색(matt finish paint), 차체랩핑(body wrap), 크롬도색(chrome illusion paint: 이중톤도색(two tone paint finish)) 및 특수페인트에 발생한 손해

- 22. 보장차량의 휠(wheel) 및 휠림(wheel rims)에 발생한 손해
- 23. 보장차량의 악세서리(accessories), 도어 몰딩(door mouldings), 유리 몰딩(window mouldings) 및 조명(lights)에 발생한 손해
- 24. 우박, 부식 및 녹손에 의한 사고

※ 용어정의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보증(수리보장)프로그램】 차량상태 및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 차량정비 등 보증업체, 판매업체, 정비업체 등이 차량에 대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자 및 피보험자 준수사항)**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점에 약관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서비스계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중 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된 서비스 계약서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손해액 산정 및 처분절차 수행 등 보험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가 이의 검증, 참관 및 문서열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휠&타이어 교환 비용 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객이 구입한 보험증권 또는 기타 약정된 문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이하 '보장차량' 이라고 합니다.)의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타이어 또는 타이어휠을 수리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게되는 수리 및 교체비용을 각 보장차량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횟수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의 목적)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보장부품 중 증권에서 정한 부품 및 보상 조건을 말합니다.

보장부품	명칭 설명
타이어(좌/우측, 프론트/리어)	자동차의 바퀴 바깥 휠 둘레에 끼워져 있는 고무
타이어휠 (좌/우측, 프론트/리어)	차축과 연결되어 차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바퀴에서 타이어를 제외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음 - 디스크(Disk) : 휠의 축 중심에서 고정되어 있는 가장자리 테 부분 - 림(Rim) : 휠의 둘레를 이루며 바퀴가 달려 있는 원형 금속 - 림 플랜지(Rim flange) : 타이어 비드(bead)의 측면을 지지하는 림의 가장자리

- 주) 1. 상기 차량부위 명칭은 차량 및 제조사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으며 외관상 차량 부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2. 타이어 및 타이어휠의 프론트/리어 부위는 각각 독립적인 1개의 부품으로 봅니다.  
 3. 타이어의 및 타이어휠의 좌/우측 부위는 각각 독립적인 1개의 부품으로 봅니다.

### 제3조(보험사고)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자동차 보장부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거리를 도달하기 전에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이하 '지정정비업체'라고 합니다)에서 보장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타이어: 파손 또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타이어휠: 제1호의 타이어와의 접촉부위가 원형기준 5cm이상 파손 (패임/변형) 혹은 휠 표면공간을 포함하여 연속된 스크래치가 10cm 이상 사고로 인하여 디스크, 림, 또는 림 플랜지가 휘어진 경우. 단, 제1호의 사고와 동시에 휠이 파손되어 휠의 변형 및 원형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만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수리비용은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여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동차 부품가격 및 수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직접비용(부가세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보상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사고당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차량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횟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장차량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하여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담보차량 운전자 포함)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 영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5. 일반적인 자연 마모로 인한 정상적인 타이어 교체 주기에 따른 교체
6. 최초 차량 출고이후 타이어 또는 휠을 임의 교체한 경우 그 타이어 또는 휠에 발생한 손해 또는 타이어 체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인한 교체
7. 휠 얼라이먼트 및 편마모로 인한 교체
8. 타이어 및 타이어휠 교체시 추가로 이루어지는 휠얼라이먼트, 휠밸런스, 타이어 로테이션 등의 발생 비용
9. 국가나 공동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0.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나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2. 지진, 분화, 홍수, 우박,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13. 화재, 폭발에 의한 손해
14. 회사에서 보상하는 부품 중 한 가지 이상과 회사에서 보상하는 부품을 제외한 다른 부품과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15. 공도에서 '도로상 위험'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타이어에 발생한 손해
16. 생산자가 정한 차량 규격을 초과한 교체, 생산자의 권고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타이어 및 휠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기타 생산자의 잘못으로 인한 교체
17. 부주의, 오남용, 충돌, 생산 결함, curb impact, 밸브 또는 림의 누출, 부적절한 장착, 타이어 측면 및 트레드의 건조부패, 타이어체인, 체인 손상, 레이스 및 오프로드 사용 등의 원인으로 타이어에 발생한 손해
18. 온로드 승용차 외의 차량, 오프로드용 타이어 혹은 휠을 장착한 차량
19. 얼라인먼트, 마모, 찢어짐에 의한 교체
20. 연방, 주, 나라,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장된 길이나 고속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 중의 손상
21. 관리자에 의해 사전 승인 되지 않은 수리 또는 교체
22. 최초 차량 출고시 타이어와 유사하지 않은 등급 타이어로의 교체

**※ 용어의 정의**

1. '공도'는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2. '도로상 위험'이란 도로에 존재하는 포트홀, 암석, 나무 조각, 금속 파편, 플라스틱 및 합성 폐기물 등을 의미합니다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자동차등록증
3. 수리/교체 전후 사진
4. 수리/교체업체 수리/교체완료 영수증
5.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객이 구입한 보험증권 또는 기타 약정된 문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이하 '보장차량' 이라고 합니다.)의 [별첨1] 보장 대상 부품(이하 '보장부품' 이라고 합니다.)을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이하 '지정정비업체' 라고 합니다.)에서 교체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차대차 사고를 제외한 단독사고로 각 보장부품 부위별로 [별첨2] 보장부품별 사고유형 및 보상조건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피보험차량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거리를 도달하기 전 사고인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담보차량 운행자 포함)의 고의로 생긴 손해
  - 2.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 3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
  - 3. 차량 제작사 또는 다른 보증프로그램에서 보상되는 손해
  - 4.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6. 위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7.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8.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9. 화재, 폭발에 의한 손해
  - 10. 일상점검의 소홀로 인한 냉각수 부족, 엔진·변속기(트랜스미션) 오일 부족 등으로 인한 고장 및 마모
  - 11.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 12. 차량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 13. 소모품 손해. 다만, 부품의 수리 시 소모품 교체 또는 교환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해당 소모품 손해를 보상하여드립니다.
  - 14. 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15. 차량 제작사의 운행능력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리지연에 의한 고장
  - 16. 차량 출고시 장착사양과 다르게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손해
  - 17.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비용
  - 18. 주행거리계의 고장, 임의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9.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 시험동안 발생한 손해
  - 20. 보장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 21. 각종 오일이나 연료의 침전, 오염 및 부식 또는 기후와 관련된 변형으로 인한 고장
  - 22.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23. 픽업 및 배송, 유상운송, 운반, 견인, 도로보수, 건축, 제설 또는 기타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24. 피보험자동차가 차량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렌터카 및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 차량,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 되는 차량, 경주용차, 공기관등 정부조달차량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 25. 사고 발생한 날 당시 주행거리가 보험증권상 기재된 거리를 초과한 경우
  - 26. 사고발생 후 30 일 이후에 통보된 손해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차량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횟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각 보장차량별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보장차량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장차량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보장차량의 등록사항에 관한 서류
  4. 교체 전후 사진
  5. 교체업체의 교체완료 영수증
  6. 기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서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보상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비서류로 대신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첨1] 보장대상 부품**

차량부위	보장부품 부위
앞유리	앞유리

※ 상기 차량 부품명은 차량 및 제조사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으며 외관상 차량 부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별첨2] 보장부품별 사고유형 및 보상조건**

차량부위	보장부품 부위	사고유형	보상조건
앞유리	앞유리	직경 1cm 이상 또는 길이 10cm 이상의 균열 또는 손상	교체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객이 구입한 보험증권 또는 기타 약정된 문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이하 ‘보장차량’이라고 합니다.)의 스마트키에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여 스마트키를 교체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각 보장차량별로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도난
  - 2. 분실
  - 3.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파손

**【보상한도 예】**

보험기간 중 위 1항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 약관에 따라 보장을 받은 후, 위 1항의 사고가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내 재차 발생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1항에서 스마트키(Smart Key)란 보장차량의 양방향 통신에 의해 키를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고, 키와 차량에 설정된 암호가 일치해야 차량의 시동이 걸리게 되는 키를 말합니다.
- ③ 위 1항 3호의 파손에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스마트키 본래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아래와 같은 외관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표면의 갈라짐, 틈, 굽힘 및 뒤틀림
  - 2. 색상 또는 기타 외형의 변화
- ④ 위 1항 3호의 파손으로 인해 보상받은 경우 파손된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 ⑤ 위 1항에도 불구하고 한 사고에서 두 개 이상의 스마트키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한 개의 스마트키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보장차량의 소유주)의 고의로 생긴 손해로 인한 수리비용
- 2. 제조업체에 의하여 제조, 판매 또는 배포된 스마트키를 제외한 모든 피보험자의 고객의 재산의 손상, 손해 또는 파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4. 스마트키의 사용중지 및 손실에 따르는 손해
- 5. 스마트키의 회수 또는 리콜로 인한 제비용 및 손해에 대한 책임
- 6. 스마트키의 디자인, 양식, 규격, 기안, 사양, 안내(광고)자료, 사용지침 상의 오류 또는 결함으로 인한 책임
- 7. 서면, 구두계약 또는 계약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 8. 사고로 인한 벌금, 위약금 또는 징벌 손해
- 9.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10. 제조업체의 원래 사양과 다르게 변경, 개조된 차량 및 차량의 스마트키
- 11. 스마트키 수리 중 발생한 피보험자의 고객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
- 12.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수리비용
- 13. 안전벨트, 에어백 등을 포함한 모든 안전장치의 수리
- 14.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수리
- 15. **사고발생 후 30일 이후에 통보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6.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손해
- 17. 기물의 파손행위 또는 악의적인 손해 또는 차량 도난 등과 관련된 손해
- 18. 스마트키의 부식, 마모로 인한 손상,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 또는 점진적 노후화에 따른 청소, 수리 및 복원
- 19. 견인비용 및 대체교통비용

- 20. Lock barrel(열쇠구), Steering column(조향축) 또는 결합이 있는 전자 제어장치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 21. 차량 구입시 제조업체에 의해 공급된 스마트키보다 고급 사양의 스마트키
- 22. 스마트키의 분실 또는 도난 시 열쇠고리에 부착된 보장차량과 관계없는 다른 열쇠 대한 책임
- 23. 보험기간 중 대상차량을 양도할 경우 양도시점이 보험기간의 만료일이 되며 양도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4. 피보험자의 고객으로부터 사고발생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후에 통보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5.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스마트키에 대한 대상차량 키박스 전자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보장차량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3. 보장차량의 등록사항에 관한 서류
  - 4. 기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서류
-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보상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비서류로 대신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견인비용)**

회사는 스마트키 보장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 보장차량의 견인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스마트키 보장비용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험기간 중 각 보장차량별로 1회에 한하여 실제로 발생한 견인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고객이 추가로 발생한 실제비용이 없거나 실제 발생비용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본 긴급출동서비스 외 추가비용에 대하여 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대체교통비)**

회사는 스마트키 보장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스마트키 보장비용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스마트키 보장비용 특별약관에 의해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스마트키 보장비용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스마트키 보장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